

# KCGS Report

제13권 7호 | 통권 제163호  
2023.7.



한국ESG기준원

---

## KCGS Report 제13권 7호

발행일 : 2023년 7월 31일

발행인 : 심인숙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3권 7호 | 2023. 7.

## ● ESG 동향

- |                             |    |
|-----------------------------|----|
| - 국내 상장사 2050 Net-Zero 공개현황 | 2  |
| -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분기검토 현황 분석    | 11 |

## Global News

- |                                |    |
|--------------------------------|----|
| ● 1. EU, 의류폐기물 규제법안 마련         | 19 |
| 2. TCFD, 기후공시 모니터링 업무 ISSB로 이관 | 21 |

# 국내 상장사 2050 Net-Zero 공개현황

최윤라\*

- ▶ 2023년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며 일반 요구사항(S1)과 함께 기후 공개(S2)를 확정하여 발표함
- ▶ 세계자본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공개를 지속가능 공개 보고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 ▶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공개는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율적 공개에서 규제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음
- ▶ 이에,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관련 공개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비교·분석함

## 검토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의 위험 및 심각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는 취약성이 높은 개도국을 넘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어려운 위협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400군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캐나다의 산불은 과거보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함에 따라 발생한 산불로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시를 포함한 동부 하늘을 뒤덮으며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13개 주에 걸쳐 1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건강에 해롭다는 적색 대기 질 경보가 내려짐
    - 미국지질조사국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뉴욕 시는 1~2mm 가라앉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1950년 이후 22cm 이상 상승하며 뉴욕 수몰 위기의 우려가 제기되며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법'을 통과시킴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환경파트 선임연구원(파트장), rarachoi@cgs.or.kr

- 지난 6월 18일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 법제화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10년간 약 22억 달러를 투입하는 기후 기술 투자 방안이 가결됨
- 기후법 통과에 따라 스위스 법인세도 기존 11%에서 약 15%로 인상될 전망이다
- 2021년에는 스위스의 '탄소세 법안'이 부결되었으나 알프스의 빙하 위기를 몸소 체험한 국민은 2년 만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며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극단적 이상기후의 주범으로 지구 온난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자본시장은 기후변화 공개를 지속가능성 공개 보고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개기준을 발표하며 일반 요구사항(S1)과 함께 기후 공개(S2)를 확정하여 발표함
-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공개는 점차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목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 의지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상장사의 2050 넷제로 목표수립 관련 공개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있어 탄소 중립에 대한 중대성을 파악하고 넷제로 전환 사회로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

## 분석 대상 및 방법론

- 분석 대상 및 방법론
  - 한국ESG기준원의 평가대상 기업<sup>1)</sup> 920 개사의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공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함
  -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수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920개 사의 대표적인 ESG 정보공개 채널<sup>2)</sup>을 활용하여 탄소 중립 목표 형태, 달성 시점 및 세부 이행계획 공개 여부 등의 데이터를 집계하였음
  - 기업은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장 유형에 따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하였고, 별도 법인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2조 원 이상과 미만 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업종은 한국 ESG기준원의 환경 평가 업종 분류체계<sup>3)</sup>를 따름
    -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920개사를 시장별로 구분해 보면 유가증권 상장사 721개사, 코스닥 199개사로 구분되며 총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166개사, 2조 원 미만의 기업은 754개사로 구분됨

1) 2022년 한국ESG기준원 환경·사회 부문 평가대상 기업

2)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로 한정

3) FnGuide의 WICS(Wis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에 기반을 두고 환경적 영향 민감도를 고려한 분류체계

- 대상 기업 중 제조업은 600개사, 비제조업 기업은 320개사이며, 유가증권 시장 내 제조업은 66.0%, 코스닥 상장사 중 제조업의 비중은 62.3%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업종에 속한 기업 수의 비중은 11.7%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10.3%, 기타서비스 9.2%, 의약품 8.9%, 기계/금속가공업에 7.0%로 5개의 업종에 가장 많은 기업이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상장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탄소 중립목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살펴봄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파악하고, 목표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설정한 탄소 중립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분석해보고자 함

### 국내 상장사 Net-Zero 목표수립 공개현황

- 분석 1. 기업 유형별 탄소 중립 목표수립 현황
  - 국내 상장사 920개사 중 13.7%의 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음
  - 시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120개사가 탄소 중립 목표를 공개하였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6개사로 탄소 중립 목표수립 공개에 있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임
    -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개한 코스닥 상장사 6개사는 모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나타남
  -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탄소 중립 목표 공개비율은 제조업 54.8.2%, 비제조업 45.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1〉 기업 유형별 탄소 중립 목표수립 공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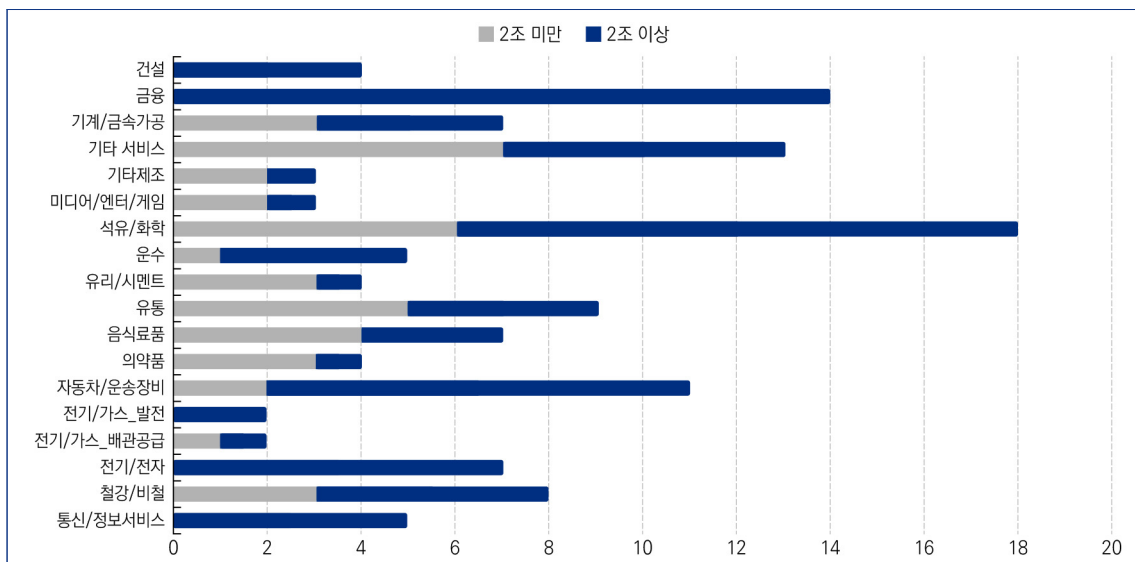
(단위: 개사)

구분	비제조	제조	총합계
<b>유가</b>	<b>53</b>	<b>67</b>	<b>120</b>
2조미만	13	24	37
2조이상	40	43	83
<b>코스닥</b>	<b>4</b>	<b>2</b>	<b>6</b>
2조미만	3	2	5
2조이상	1	-	1
<b>합계</b>	<b>57</b>	<b>69</b>	<b>126</b>

-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개한 기업 126개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수립 공개율은 84개사 66.7%로 자산 2조 원 미만의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공개율인 42개사 33.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임

- 탄소 중립 목표수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중·장기적 경영전략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방안을 발굴해야 하는 등 많은 자원과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개하는 비중이 높음
- 업종별 탄소 중립 목표수립 공개율을 분석해 본 결과 석유/화학 업종은 126개사 중 18개사인 14.3%로 탄소 중립 목표 공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금융 업종에서는 14개사 11.1%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공개하고 있으며, 기타서비스 13개사 10.3%, 자동차/운송장비 업종에서는 11개사 8.7%의 비율로 탄소 중립목표를 공개하고 있음
- 업종 대부분에서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탄소 중립 목표 공개율이 높았으나, 기타서비스 업종에서는 총자산 규모가 2조 원 미만인 기업에서의 공개율이 높았음

〈그림 1〉 자산규모 및 업종별 탄소 중립 목표수립 공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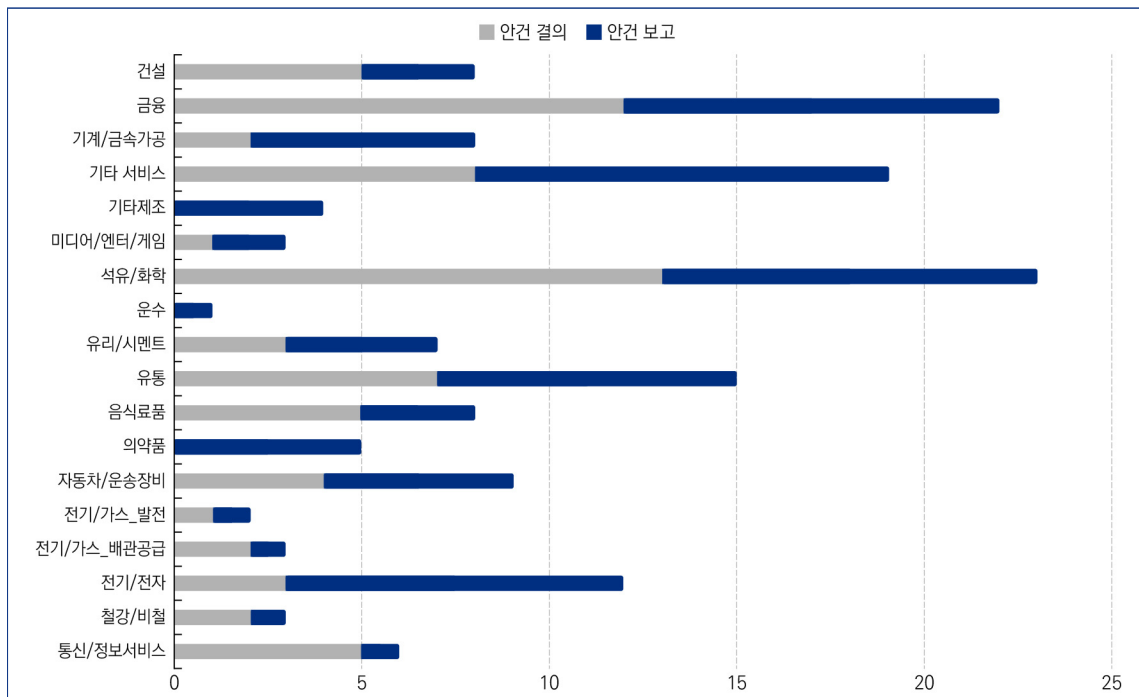
#### □ 분석 2. 탄소 중립 목표수립 공개 출처 현황

-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채널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개 출처별로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77.8%,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목표를 공개한 기업은 22.2%에 불과함
  - 사업보고서 내에 탄소 중립 목표를 별도로 공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 상장사 가운데 이사회 내에서 기후변화 관련 탄소 중립 이슈를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158개사로 약 17.2%의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감독·관리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사회 내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이슈를 관리하는 기업 중 대부분은 유가증권 상장사로

93.7%의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사회 내에서 탄소 중립 이슈를 검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비율은 6.3%에 불과함

- 자산규모에 따르면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158개사 기업 중 100개사인 63.3%가 이사회 내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2조 원 미만의 기업인 58개사 36.7%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 내 안전 처리 방식별로 분석해 본 결과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안전이 보고된 경우는 85건이며 안전이 결의된 경우는 73건으로,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안전이 ‘보고’된 경우가 약 7.6%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음
- 업종에 따르면 이사회 내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안전이 가장 많이 다뤄진 상위 업종 5개 가운데 석유/화학 업종에서 14.6%로 가장 많은 안전을 이사회 내에서 보고하거나 결의하였으며, 금융 13.9%, 기타서비스 12.0%, 유통 9.5%, 전기/전자 7.6%의 순으로 기후변화를 기업의 중대한 이슈로 설정하고 대응 역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2〉 업종별 이사회 내 탄소 중립 관련 안전 처리현황



□ 분석 3. 국내 상장사 Net-Zero 수립 유형 분석

- (목표수립) 국내 상장사 중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 기업은 총 126개사이며, 수립한 기업 중 95.2%가 유가증권 상장사 기업으로 확인됨
- (목표 형태)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기업 가운데 56.3%는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43.7%의 기업은 선언적 형태의 정성적 목표만 수립하여 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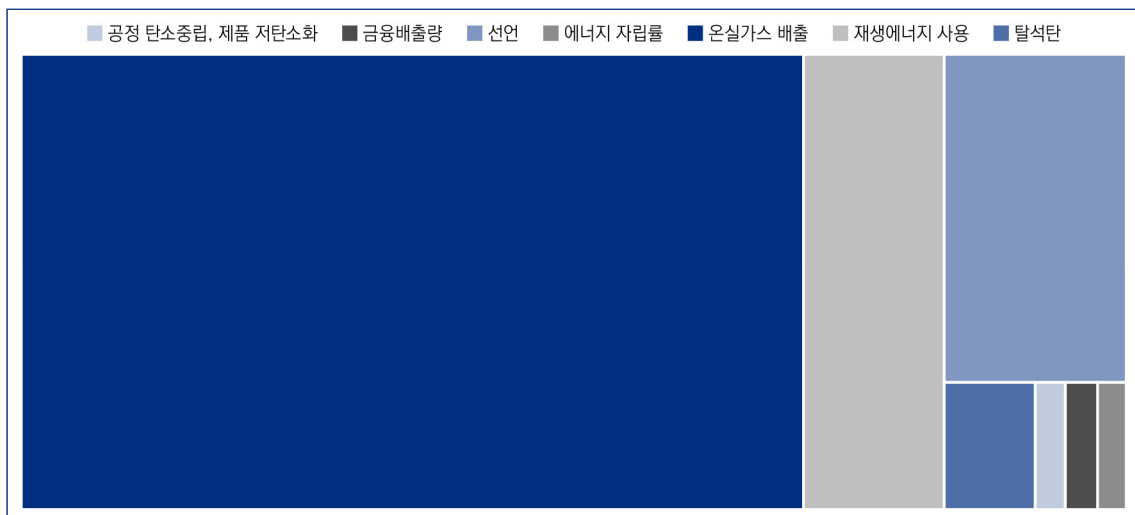
〈표 2〉 국내 상장사 탄소 중립 목표 유형

(단위: 개사)

구분	정량 목표	정성 목표	총합계
<b>유가</b>	<b>69</b>	<b>51</b>	<b>120</b>
2조미만	16	21	37
2조이상	53	30	83
<b>코스닥</b>	<b>2</b>	<b>4</b>	<b>6</b>
2조미만	2	3	5
2조이상	-	1	1
<b>합계</b>	<b>71</b>	<b>55</b>	<b>126</b>

- (목표 지표) 국내 상장사의 Net-Zero 목표를 조사해 본 결과 단순히 선언형태로 공개한 기업은 11.9%이며, 기업이 Net-Zero 목표 설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로써 전체 탄소 중립 목표 설정 기업의 70.6%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 지표로 설정함
  - 금융권에서는 탈석탄 선언을 탄소 중립 목표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RE100 이니셔티브의 확산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자립률을 Net-Zero 지표로 활용한 사례도 있음
  - 기타 사항으로는 공정단계의 탄소 중립 및 제품 저 탄소화 등 정성적 목표를 설정한 사례도 조사됨

〈그림 3〉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지표



- (목표 시점)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한 기업 126개사 가운데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살펴보면, 2050년을 제시한 기업이 65.9%로 가장 많았으며 2040년 목표 달성 시점이 11.1%, 2030년 달성 시점을 목표로 잡은 기업은 7.1%로 나타남

- (목표 유형) 탄소 중립목표를 제시한 기업들이 활용한 지표는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집약도, 과거 기준연도 대비 혹은 BAU 대비로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됨
    -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기업의 비중은 53.2%로 가장 높았으며, 과거 기준연도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34.1%, 그 외 BAU 대비 목표 설정 비율은 5.6%, 집약도를 기준으로 설정한 기업은 4.8%로 파악됨
  - (중간 목표) 국내 상장사 중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한 기업 중 65.9%는 중간 목표도 함께 공개하고 있었으며, 29.4%의 기업은 탄소 중립 달성 목표 시점만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중간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
- 분석 4.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와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연계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범위를 협력사로 넓혀감에 따라 국내 상장사의 이니셔티브 참여도 증가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 중립의 이행방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UN SDG의 연계성도 조사함
  -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기업 중 RE100에 가입한 국내 상장사는 23개사, K-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2개사, EV100 참여기업은 10개사, SBTi 참여사는 23개로 나타났으며, SDG 목표와 연계한 상장사는 27개사로 파악됨
  -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시나리오 분석에 의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행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기업들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이행방안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분석 5. 탄소 중립 전략 수립 및 세부추진 계획 공개현황
- 국내 상장사 중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넷 제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한 기업을 분석해 봄
    - 탄소 중립 목표를 공개한 기업 126개사 가운데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약 절반 정도인 45.2%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세부추진 계획까지 함께 공개한 기업은 37.3%로 인 것으로 조사됨
    - 넷 제로를 선언한 기업 중 19%의 기업은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없이 탄소 중립 달성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만 수립하여 공개함
    - 넷 제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의 자원 배분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유가증권 상장사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에서 수립한 비율이 훨씬 높았음
    -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중·장기 전략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공개함

〈표 3〉 국내 상장사 탄소 중립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현황

(단위: 개사)

구분	탄소 중립 전략 수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총합계
<b>유가</b>	<b>55</b>	<b>70</b>	<b>125</b>
2조미만	13	16	29
2조이상	42	54	96
<b>코스닥</b>	<b>2</b>	<b>2</b>	<b>4</b>
2조미만	2	2	4
2조이상	-	-	-
<b>합계</b>	<b>57</b>	<b>72</b>	<b>129</b>

- 넷제로 목표를 수립한 상장사의 92.1%는 최근 3개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Scope3 배출량까지 공개한 기업은 32.5%로 나타남  
- Scope3 배출량의 공개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ISSB의 지속가능성 공개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Scope3 배출량 공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경우, 국가 의무 온실가스 배출 관리체제에 속하게 됨에 따라 비의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비율이 높음  
-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상장사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율은 44.4%이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에 속한 기업은 14.3%인 것으로 파악됨

##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 19사태를 지나가며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과 취약한 사각지대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국가를 넘어 민간 부문에서도 넷 제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고 있음
-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고, 2011년 POST 2020 신기후협상 개시를 통해 2015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음
-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목표가 되었고,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국가별 장기적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실질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 단위에서 저 탄소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 중립 전략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2050년 넷 제로 달성이 선언적 의미에서만 그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 가장 많이 일어나야 하는 산업계의 경우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실질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비율은 크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3년 5월 기준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920개사 상장사 가운데 13.7%만이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개한 126개사 가운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45.2%, 세부추진계획까지 수립하여 공개한 기업은 37.3%로 파악됨
  -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선언한 기업 대부분은 유가증권 상장사 혹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확인됨
    -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완료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량과 목표 수준 및 달성 시점을 설정 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감축 수단을 발굴해야 함
    - 넷 제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의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전략 수립 및 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C-level의 감축 의지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 탄소 중립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 무역 시장 내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한 다국적 기업은 자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 공급망 실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탄소 배출량 감축을 빠르게 요구하고 있음
  - 지난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기후공개(S2)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상장사의 기후 관련 공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 기후공개(S2)에서는 각 기업의 경영전략과 에너지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기업의 중대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장기 넷 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정보와 재무 정보를 통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에, 향후 각 기업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탄소 중립목표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산업 경쟁력과 그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 요인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탄소 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의사결정권자인 C-Level의 Net-Zero 구현을 위한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시사됨

#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분기검토 현황 분석

이동우\*

- ▶ 감사위원회는 공시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무결성 제고를 위하여 상법상 의무사항인 연간재무제표 검토뿐만 아니라 분기재무제표 검토 또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KCGS ESG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분기보고 과정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규제기관은 감사위원회의 분기재무제표 검토를 권고 혹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 그러나 KOSPI 100 기업 감사위원회의 2022사업연도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의 기업이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감사위원회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감사위원회가 분기별 검토활동 등 회계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분기검토 필요성

-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관으로서 이사의 업무집행 및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보유함<sup>1)</sup>
  - 상법은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sup>2)</sup>,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는 회계감사를 포함함<sup>3)</sup>
  -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결산기에 대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sup>4)</sup>
- 분기보고 제도<sup>5)</sup>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장회사가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무결성 제고를 위해 감사기관이 정기적으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dwlee@cgs.or.kr

1) 강희갑(1999),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입법론적 검토", 상장협 39호 20-35

2) 상법 제41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415조의2 제7항; 상법 제412조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15조의2 제7항은 감사 관련 조항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도록 규정함

3) 편집대표 권순일(2021), "주식 상법(회사3)",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858쪽

4) 상법 제447조의4 제1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제2호

5) 자본시장법 제160조

-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취지에서<sup>6)</sup> 2001년부터 자산총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에게 분기재무제표를 검토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sup>7)</sup>
- 다수의 연구는 외부감사인 분기검토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함<sup>8)</sup>
-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는 독자적,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sup>9)</sup> 비록 법령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외부감사인의 분기재무제표 검토와 별개로 감사위원회도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나름의 검토를 수행함이 바람직함
-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분기보고 검토 관련 국내외 규제기관의 규정을 비교하고 국내 주요 기업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분기보고 검토 등 활동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분기검토 관련 KCGS 가이드라인

- KCGS의 ESG 모범규준(2021.8. 개정, 이하 'KCGS 모범규준')은 연성규범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사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자격, 활동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권고하고 있음

〈표 1〉 KCGS 모범규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사업무

주요 감사업무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내부 및 외부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부정행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발, 사실 조사, 후속 조치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출처: KCGS 모범규준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1),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 도입 추진”  
 7) 구 증권거래법상 외부감사인의 분기재무제표 검토제도 적용 대상은 거래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중 금융기관 또는 2001년 3분기부터는 직전 연도 말 자산총계 2조 원 이상, 2004년부터는 1조 원 이상인 법인이었으며, 현재는 금융기관 또는 직전 연도 말 자산총계 5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임; 김태동, 손성규(2005), “상시감사체제가 재무제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기보고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5(2), 1-2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8) 오희화, 안상봉(2015), “분기재무제표에서 기업소유구조와 의무검토 여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61, 191-216.; 김경태(2013), “감사품질이 분기보고서 검토 제도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9), 2377-2396.; 김경태(2013), “분기보고서 검토 제도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분기보고서 대비 연차재무제표 상의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22(1), 267-298.; 안상봉(2010), “분기재무제표 검토의 보수성 검증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30, 111-129.; 김태동, 손성규(2005), 위의 논문.  
 9) 편집대표 권순일(2021), “주식 상법(회사4)”,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450, 462쪽.

- 동 모범규준은 분기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분기보고 과정에 대해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표 2〉 현행법과 KCGS 모범규준의 감사위원회 관련 주요 사항 비교

구분	현행 법령	KCGS 모범규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계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1항)</li> <li>-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함(금융사지배구조법 제20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계 1조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함</li> <li>- 감사기구 산하에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함</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상법 제415조의2 제2항)</li> <li>-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li> <li>-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2인 이상 포함될 것을 권고함</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는 결산기에 대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의4 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사위원회가 분기보고 과정에 대해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b></li> <li>-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함</li> <li>- 감사위원회 위원은 공식 회의 외에도 경영진,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 등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을 권고함</li> <li>-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li> </ul>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CGS 모범규준

- 같은 취지에서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23.2. 개정, 이하 'KCGS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간 감사위원회가 한 사업연도에 4회 미만으로 개최된 경우 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물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하도록 권고함

## 국내외 기관의 규제 및 가이드라인 비교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하여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sup>10)11)</sup>
- 한편 해외 일부 주요국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중간재무제표 검토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연성규범을 통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1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제48조, 제78조 등

11) 한국거래소(202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 일부 국가에서는 연간 최소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 개최 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권고 또는 규정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음

〈표 3〉 해외 규제기관의 재무제표 검토 관련 규정

국가	구분	내용
영국	권고사항	<p><b>재무보고위원회(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sup>12)</sup></b>  <b>Section 2.18.</b>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 및 감사 주기상 중요한 일정에 맞추어 개최되도록 최소 3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함. 예컨대 감사위원회는 내외부 감사 계획을 검토하거나 중간재무제표, 잠정실적공시, 연차보고서가 곧 완료될 시점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원문] It is recommended there should be no fewer than three meetings during the year, held to coincide with key dates within the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cycle.*                      * For example, when the audit plans (internal and external) are available for review and when interim statements, preliminary announcements and the full annual report are near completion.</p>
미국	의무	<p><b>뉴욕증권거래소(NYSE) Listed Company Manual<sup>13)</sup></b>  <b>Section 303A.07(b)(iii)(B)</b> 감사위원회가 분기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연간재무제표를 경영진,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등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하여야 함                      [원문] The audit committee must have a written charter that addresse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udit committee - which, at a minimum, must include ... to meet to review and discuss the listed company's annu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with management and the independent auditor, ...</p>
캐나다	의무	<p><b>증권관리협회(CSA) National Instrument 52-110<sup>14)</sup></b>  <b>Section 2.3(5)</b> 감사위원회가 발행사의 재무제표, 경영진단 의견서, 연간 및 중간 실적 보도자료 등의 정보를 발행사가 공시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함                      [원문] An audit committee must review the issuer's financial statements, MD&amp;A and annual and interim profit or loss press releases before the issuer publicly discloses this information.</p>
홍콩	의무 (PART 1) 원칙준수 예외설명 (PART 2)	<p><b>홍콩증권거래소(HKEX) Corporate Governance Code<sup>15)</sup></b>  <b>PART 1. E.(d)(i)</b> 감사위원회가 반기, 분기, 연간 실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보고자료를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원문] To provide transparency, issuers must include ... for the audit committee, a report on how it met its responsibilities in its review of the quarterly (if relevant), half-yearly and annual results, ...  <b>PART 2. D.3.3(d)</b> 감사위원회가 발행사의 재무제표와 연차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준비된 경우 분기보고서 등의 무결성을 모니터링하고, 작성 과정에서의 중대한 재무보고 판단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함                      [원문] The audit committee's terms of reference should include at least: to monitor integrity of the issuer's financial statements and annual report and accounts, half-year report and, if prepared for publication, quarterly reports, and to review significant financial reporting judgements contained in them. ...</p>

12) Financial Reporting Council(2016),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13) New York Stock Exchange, Listed Company Manual  
 14)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National Instrument 52-110: National Instrument는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입법화된 문서(Instrument)를 의미함  
 15) HKEX, Main Board Listing Rules, Appendix 14 Corporate Governance Code  
 1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17)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Listing Obligations and Disclosure Requirements) Regulations 2015

국가	구분	내용
싱가포르	원칙준수 예외설명	<p><b>싱가포르통화청(MAS) Code of Corporate Governance<sup>16)</sup></b></p> <p><b>Provisions 10.1</b>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재무제표 및 모든 재무실적 관련 발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재무보고 쟁점 및 판단을 검토하고, 재무 기록 및 재무제표에 대한 CEO와 CFO의 보증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p> <p>[원문] The duties of the AC(Audit Committee) include: reviewing the significa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and judgements so as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and any announcements relating to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reviewing the assurance from the CEO and the CFO on the financial records and financial statements.</p>
인도	의무	<p><b>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LODR) Regulations 2015<sup>17)</sup></b></p> <p><b>Regulation 18 (2)(a)</b> 감사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회의 간 간격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p> <p><b>Schedule II Part C A(5)</b>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승인 전에 경영진과 함께 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도록 함</p> <p>[원문] The audit committee shall meet at least four times in a year and not more than one hundred and twenty days shall elapse between two meetings.</p> <p>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shall include ... reviewing, with the management,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before submission to the board for approval.</p>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 KOSPI 100 감사위원회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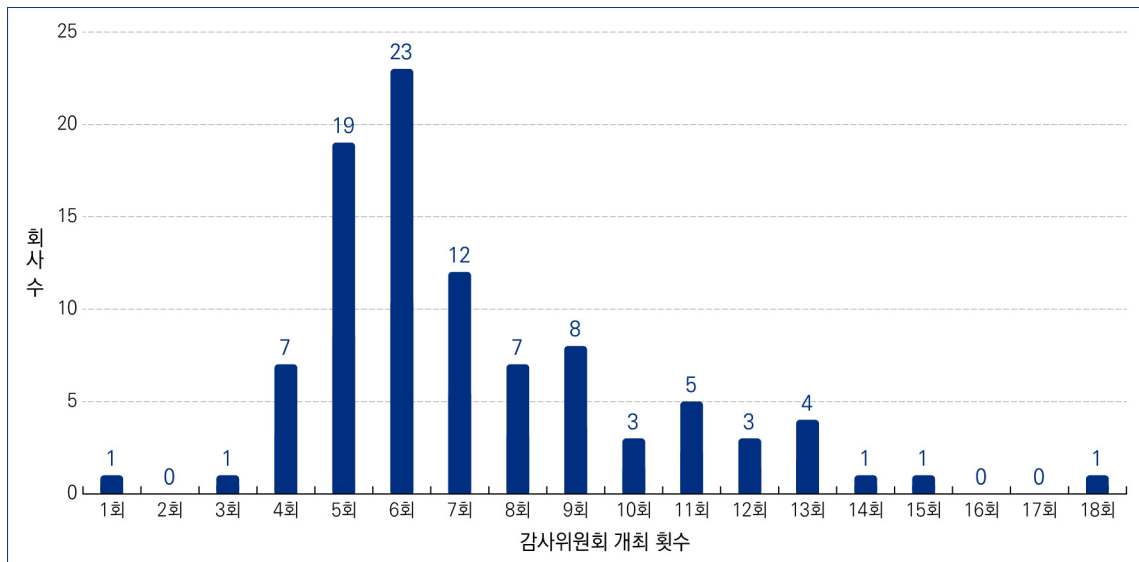
- 2022년 말 기준 KOSPI 100 지수구성 종목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96사를 대상으로 2022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재무제표 분기검토 여부를 조사함<sup>18)</sup>
  - 자산총계 2조 원 이상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하여 대규모 회사가 다수 포함된 KOSPI 100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함
  - 2022년 말 기준 KOSPI 100은 국내 전체 상장회사 수의 3.7%를 차지하나 시가총액의 비중은 66.6%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에서의 중요성이 상당하므로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KOSPI 100을 검토하는 의미가 있음<sup>19)</sup>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4사 중 3사는 자산총계 2조 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며 1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개별법에 따라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내 기업은 재무제표 분기검토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간소화된 정보만을 공시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의' 또는 '검토' 여부를 기준으로 감사위원회의 활동 수준을 판단함
- (위원회 개최 횟수) 표본 회사들은 2022사업연도 감사위원회를 평균 7.3회 개최하였으며 2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사위원회가 국내외 기관이 규제 또는 권고하는 수준(연 3회 또는 4회)을 상회하는 횟수의 회의를 개최함

18) 감사기관으로 상근감사를 설치한 회사도 재무제표 분기검토 여부를 조사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함

19)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2022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 2690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2086.6조 원, KOSPI 100의 시가총액 합계는 1389.3조 원임

- 위원회에 행정적 안전<sup>20</sup>만이 상정된 경우, 또는 재무·회계 관련 안전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위원이 전부 불참한 경우 등 감사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건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7.0회가 개최되어 권고 수준을 상회함
- 2사의 경우 각각 연간 1회, 3회의 감사위원회만을 개최하여 내부감사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sup>21</sup>)
- 참고로 최근 3년간 KCGS가 과거 감사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감사위원회 4회 미만 개최 이력을 사유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반대투표를 권고한 안건은 2023년 2건, 2022년 3건, 2021년 0건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횡수의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충실히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2022사업연도 분석대상 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 분포



자료: 각 회사 FY22 사업보고서, DART

- **(분기재무제표 결의)** 감사위원회가 분기재무제표에 대해 결의를 거친 회사는 96사 중 4사 (4.2%)에 불과하여 분석대상 회사의 감사위원회 대부분이 분기재무제표를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가 분기별 ‘회계결산’을 결의한 안건은 재무제표를 결의한 것으로 분류함
- **(분기재무제표 보고)** 한편 45사(46.9%)는 감사위원회가 보고안건을 통해 분기재무제표에 대해 검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의 감독 절차를 취하였음<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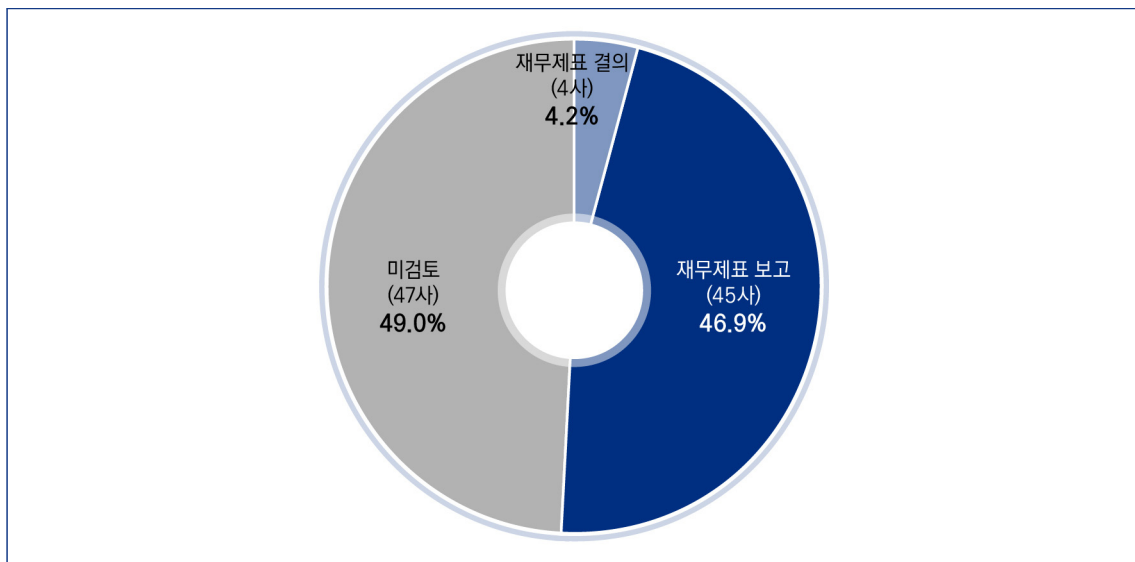
20)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안건,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 안건 등

21) 감사위원회를 3회 개최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안건만을 상정한 회차가 있어 실질적 감사기능을 수행한 회의는 2회에 불과함

22) 분기별 재무실적, 경영실적, 사업실적 등을 보고하는 안건은 재무제표 보고로 인정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가 내부조직으로부터 재무제표 보고를 받은 회사는 34사로, ‘정기보고서’, ‘재무제표 내부감사’, ‘재무제표 검토’, ‘회계검토’, ‘결산’ 등의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은 재무제표를 보고한 것으로 분류함
- 감사위원회가 검토 또는 내부 보고 절차 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기검토에 대한 보고만을 받은 회사는 11사로<sup>23)</sup>, 보고 의안내용이 ‘감사진행상황 보고’, ‘회계감사 진행경과 보고’, ‘검토결과 보고’ ‘검토 진행현황 보고’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내역과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의 일자 및 논의사항이 같은 경우 외부감사인의 보고만을 받은 것으로 분류함
- **(미검토)** 감사위원회가 분기재무제표에 대해 감독 절차를 거친 49사를 제외한 47사(49.0%)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재무제표에 대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의 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요구됨
- 감사위원회가 분기별로 ‘내부감사’만을 보고받았다고 공시한 12사의 경우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만으로는 감사위원회가 분기재무제표 검토를 분명히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무제표를 검토하였다고 간주하지 않음

〈그림 2〉 2022사업연도 분석대상 회사 재무제표 분기검토 현황



자료: 각 회사 FY22 사업보고서, DART

23)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일방의 의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결론 및 제언

-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KOSPI 100 등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보고가 필요하므로 감사위원회는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이 바람직함
- 그러나 2022사업연도 공시자료 분석 결과 KOSPI 100 가운데서도 감사위원회가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회사가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또한 감사위원회가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결의 등 적극적 검토 절차를 거치는 회사는 극히 일부로 나타남
-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 정확한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과 별개로 분기보고 과정에서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감사위원회의 재무·회계 관련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한 대규모 상장회사는 KCGS 모범기준의 권고와 같이 회계·재무·감사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감사위원회에 2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sup>24)</sup>
  - 한편 감사위원회가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위원의 업무량이 증가하므로 대규모 회사는 감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상향할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 함<sup>25)</sup>
-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는 KCGS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개최 횟수뿐만 아니라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여부 등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감사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한 인물이 선임되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감사기관으로서의 실효성이 담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4) 본고 조사 대상 96사의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수는 1인 70사, 2인 20사, 3인 5사, 4인 1사로 나타났으며, 상장회사 전체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수에 관한 분석으로 PwC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2023), “거버넌스트렌드 리포트 2023 Vol.1”

25) 2015년 KPMG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감사위원회의 회의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에 달해 국내 KOSPI 200 기업의 평균 감사위원회 회의시간 1시간을 크게 상회함; 김유경(2016), “감사(위원회)조직의 운영\_(1) 규정 제정 및 연간 활동계획 수립”, 삼정KPMG

## 1. EU, 의류폐기물 규제법안 마련

정선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의류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 도입을 포함한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sup>1)</sup> 개정안을 채택함<sup>2)</sup>
  - 본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섬유제품 전략 (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바탕으로 하며,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의류제품 관리를 통한 의류폐기물의 궁극적인 감소를 목표로 함
  - 동 개정안은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EPR제도 적용을 통해, 의류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제품 생산자의 책임으로 규정함
    - EPR제도는 폐기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금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미 포장, 배터리, 전기 및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음
- 폐기물 기본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회원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류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을 확대 부여해야 하며, 섬유 및 의류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의류폐기물의 관리, 운송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며, 해당 비용은 향후 섬유 및 의류제품이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음
    - 생산자가 부담한 비용은 의류폐기물의 수집, 분류,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기술 연구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 관리당국은 모든 의류 생산자의 정보를 포함한 ‘생산자등록부’를 마련하여 생산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며, 다수의 생산자가 의무 이행을 위한 조합 등 (이하 “생산자단체”)의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승인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는 의류 및 신발제품에 대한 별도의 수집/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폐기물의 수거, 운송 등 실질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함
    - 생산자단체는 지속가능한 소비, 제품의 재사용 및 적절한 폐기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속 안내해야 함

---

\*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실 연구원, sac@cgs.or.kr

1)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 2023년 2월, 탄소중립을 목표로 발표된 ‘그린딜(EU Green Deal)’의 후속 정책 중 하나로, 폐기물 감소 및 자원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제정

2) European Commission, “Circular economy for textiles: taking responsibility to reduce, reuse and recycle textile waste and boosting markets for used textiles”, 2023.7.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635](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635)

- EU는 회원국 외 국가로의 불법 의류폐기물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관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할 계획임
- 국내의 경우, 환경부가 폐의류·폐섬유 제품에 대한 EPR제도 적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2018년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나, 당시 정부는 환경에 위해한 제품군<sup>3)</sup>에 한해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류에 대한 자율적 처리 원칙을 유지함

---

3) 우리나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 1월 시행되었으며, 현재 형광등, 타이어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4개 포장재 제품군에 대한 재활용 의무가 부여됨

### 2. TCFD, 기후공시 모니터링 업무 ISSB로 이관

박정민\*

- 2023년 7월 10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담당하던 기후공시 모니터링 업무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로 이관될 예정이라 밝힘<sup>1)</sup>
- 앞서 지난 6월 26일, ISSB는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하였으며, 공시기준 최종안은 이전의 TCFD 보고체계 등을 완전히 통합하여 IFRS S1, S2로 제정됨
  - IFRS재단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회계 표준을 제·개정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현재 167개국이 IFRS 표준을 채택 및 적용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공시기준들의 표준화 요구가 증가하자, IFRS재단은 2021년 11월 COP26 회의에서 ISSB를 출범하였으며, ISSB는 TCFD 보고체계와 SASB 산업별 표준지표 및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올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함
  - IFRS재단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조직과의 지속적인 합병 및 업무 이관을 통해 공시기준의 표준화와 더불어 다양한 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임
    - 2022년 1월,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와 합병 완료
    - 2022년 8월,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업무를 담당하는 가치보고재단(VRF, Value Reporting Foundation) 재단과 합병 완료
    - 2023년 3월, GRI를 운영하는 글로벌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GSSB,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와 양해각서(MOU) 발표
- 특히 이번 발표된 IFRS S2에서 TCFD의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ISSB가 기존 TCFD의 업무를 이관받게 되며 이후 TCFD는 자체적으로 해산될 예정임
-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ISSB의 국내 도입에 따른 심의·의결·자문기구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였으며,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공시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음
  - KSSB는 올해 9월, ISSB 최종안의 번역본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및 KSSB 심의를 통해 올해 말 전체문서 번역본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

---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jmpark@cgs.or.kr

1) "IFRS Foundation welcomes culmination of TCFD work and transfer of TCFD monitoring responsibilities to ISSB from 2024", IFRS Press, 2023.07.10.